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69호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비부착 외부 포스트텐션을 이용한 기초 하중전이 기술 (PT하중전이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540)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1)	법인명(성명)	디엘이앤씨(주)(마창민)		
	주 소	우 03181, 서울시 종로구 통일로 134 디타워 돈의문		
	전화번호	02-2011-7114	팩스번호	02-2011-8000
신청인(2)	법인명(성명)	(주)시엘에스이엔지(임철우)		
	주 소	우 06251,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20 2층 (역삼동, 정보역삼빌딩)		
	전화번호	02-6917-3500	팩스번호	02-6917-3501
신청인(3)	법인명(성명)	(주)후레씨네코리아(박상진)		
	주 소	우 06155,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55, 2층 (삼성동, 알앤텍빌딩)		
	전화번호	02-2056-0500	팩스번호	02-515-4184
신청인(4)	법인명(성명)	(주)택한(문종훈)		
	주 소	우 16006,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40, 인덕원IT밸리 B동 811호		
	전화번호	070-8844-0640	팩스번호	02-6280-0641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964호
- 명 칭 :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비부착 외부 포스트텐션을 이용한 기초 하중전이 기술 (PT하중전이공법)

○ 기술분야 : 건축 > 철근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 골조

○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기초와 접한 벽체에 외부 포스트텐션에 의한 긴장력을 도입하여 벽체에 작용하는 하중을 전이시킴으로써 기존 말뚝의 반력비(작용하중/허용지지력)를 조절하는 기술로서, 기초와 접하는 벽체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20MPa 이상, 정착구를 부착하는 벽체의 최소 두께가 150mm 이상, 기존 말뚝의 지지력 조절 범위가 말뚝 허용지지력의 20%(말뚝 허용지지력 400kN/본 기준) 이내에 적용되는 비부착 외부 포스트텐션을 이용한 기초 하중전이 기술이다.

○ 신기술의 범위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기초와 접한 벽체에 일자형, 대각형, 절곡형(L형 또는 U형)으로 비부착 외부 포스트텐션을 도입하여 벽체에 작용하는 하중을 전이시킴으로써 기존 말뚝의 반력비를 조절하는 기초 하중전이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 해당 없음

5. 기 타

-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